

기능사 검정 필기시험 면제 기준 훈련시간 개정 안내

고용노동부령 제293호(공포 : 2020. 9. 8.)에 따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중 필기시험 면제 기준 훈련시간 변경사항 관련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
- (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) 시행규칙 제18조제1호 나 목과 다 목의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기준 훈련시간을 '1,400시간→ 1,200시간'으로 조정
 - (적용례)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또는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
 - ※ 원적교 학생의 훈련시간 인정여부는 「20년도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 지침」에 따름
 - * 나 목: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7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
 - ** 다 목: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기술계 학원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과정
 - (수험 대상) 상기“나”목과 “다”목의 직업훈련과정(1천20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)에서 해당 과정의 100분의 70이상을 이수한 사람
 - 100분의 70이상 이수 시점은 당해 훈련기간(일수)이 아닌 실제 훈련시간으로 산정
 - 필기시험 면제예정자는 실기시험 최초 시행일 전일 기준으로 100분의 70이상을 이수한 사람
 - (면제 종목 및 면제 기간) 면제대상종목 <시행령 제16조제2항제3호>
 - 기술·기능 분야 중 기능사 검정의 종목 중에서 해당 응시자가 선택한 1개 종목[동일·유사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한정]의 필기시험을 해당과정을 이수한 날부터 2년간 면제
-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신청방법관련 세부사항은 9월중 안내 예정